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최근 이민 소식을 간추려 드립니다.

1. 이민국 대면 서비스 재개

6월 4일부터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의 시민권 선서식이 6월 5일과 6월 15일 각각 잡혔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 다.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4일부터 영 주권/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 문 날인, 인포패스 등의 대면 접촉 서 비스가 각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시 작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등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중이신 분들은 인터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 시길 바랍니다.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사항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계 속 승인 가능일 오픈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USCIS는 Filing Chart를 통해 2020년 6월 한 달 동안도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 6월 1일부터 급행서비스 재개

지난 3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급행 서 비스(Premium Service)를 6월 1일부 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 세한 내용을 보면 6월 1일부터 I-140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급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I-129(취업 비 자, 종교비자, E-2 Visa)의 경우는 6 월 8일 이전에 접수되어 현재 접수증 을 받은 케이스에 한해서 6월8일부터 급행으로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합 니다. 그리고 6월 22일 이후부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행서비스 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0년 6월 영주권 문호 안내 (취업 이민 3순위 전진 / 영주권자 배우자 동 시 접수 가능)

우선 가장 큰 소식은 취업 3순위 이 민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일 부터 적용되는 6월의 영주권 비자 블 레틴에 따르면 3순위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은 10개월 1주가 진전되었습니 다. 3순위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지난달과 같은 날짜 즉, 2019년 4월1 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순위, 2순위 취업이민 오픈(current)

4. 지문 날인 면제 증가

노동허가증(EAD), 재입국허가서(Re -entry permit),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재신청 그리고, 기타 영주권 갱신 조건부 해제 등에는 지문 날인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 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민 지문에 시스템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지문 채 취 없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DACA 연장 신청 수속 기간 단축

최근 DACA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Fingerprint과정이 없이 2달 전후 기 간에 승인을 해 주고있습니다. Renew 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국이 120일 이내 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서류 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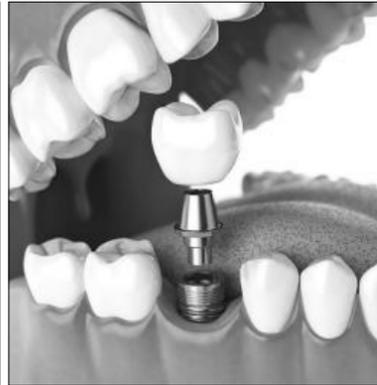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심미 임플란트 치료 II



치아가 상실될 경우 일어나는 치아 주 변 조직의 변화는 심미성이 강조되는 상악 전치 부위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인자라는 점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심미성을 유지하거나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해 오 긴 했지만 아직 예측 가능한 치료법은 사실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조직 변화의 양을 줄이 기 위해 현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부 가시술법들과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임플란트 즉시 식립 술을 치료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의 결정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 연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 다. 물론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다고 조 직의 변화가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플란트 크기와 치아 뿌리의 크기 차 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에 충분한 뼈이 식이 병행되어야 변화의 양이 줄어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의 식립 깊 이도 중요한데 아무리 조직 변화의 양 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띠 정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치아의 혀쪽 방향과 뿌리쪽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런 조직 변화의 방향을 고려해서 임플란트의

깊이와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 즉시 임플란트 식 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아 주변 조직이 상당량 파괴되었거나 임플란트 를 고정할 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 우는 즉시 식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노력을 구하든지 조직 파괴전 상태로 조직을 재생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주변 조직의 파괴는 없으나 임플란트 를 식립 고정할 수 없는 경우 발치와에 뼈이식을 하여 발치와가 치유되는 동 안 발생하는 조직의 변화를 줄이도록 합니다.

이 술식을 '발치와 보존술' 이라고 하 며 임플란트 식립이 고려되는 부위뿐 아니라 통상적인 브리지 시술에서도 심 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도되 고 있습니다.

▶ 1321호에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